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6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달성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, 달성군 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정하는 한편 정년·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등 후생복지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속공무원의 범위 수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후생복지사업 근거 조항 마련(안 제6조)
- 다.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항 추가(안 제13조)
- 라. 달성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6조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  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  - (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, 제77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2. 9. 1.~ 9. 21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, 의회”를 “본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그 밖에 휴직중인”을 “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3조의 달성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

제6조제6호 중 “퇴직예정자 및 그 배우자”를 “퇴직예정자”로 하고, “국외 연수”를 “국내외 연수”로 하며, 같은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정년·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,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위원장,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3조제7항 중 “담당이”를 “담당 팀장이”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⑩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) 군수는 달성군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소속공무원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<u>본청, 의회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이하 “군청 등”이라 한다)</u>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.</p> <p>2. ~ 9. (생략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질병·육아·가사 휴직을 제외한 <u>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----- --- <u>본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용범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 <u>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</u> 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13조의 달성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</u></p> <p>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.</p>



<p>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<u>담당</u>이 된다.</p>	<p>-----          --- <u>담당 팀장이</u> ---.</p>
<p>⑧ (생략)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⑧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⑨ <u>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⑩ <u>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.</u></p>
<p>⑨ (생략)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⑪ (현행 ⑨와 같음)  <u>제16조(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등) 군수는 달성군의회 의장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6조 (생략)</p>	<p>제17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</p>

**□ 지방자치법**

**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**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**□ 지방공무원법**

**제6조(임용권자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

**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